

예 산 총 칙

2017년도 추경 1 회

제 1 조 2017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1,698,600,000	50,958,000
일반회계	1,398,000,000	41,940,000
특별회계	300,600,000	9,018,000
공기업특별회계	205,700,000	6,171,000
하수도공기업사업특별회계	130,000,000	3,900,000
상수도공기업사업특별회계	75,700,000	2,271,000
기타특별회계	94,900,000	2,847,000
주택사업특별회계	806,000	24,180
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	15,260,000	457,800
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	0	0
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	6,021,000	180,630
치수사업특별회계	2,015,000	60,450
저소득주민주거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	1,640,000	49,200
청소사업특별회계	66,834,000	2,005,020
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	923,000	27,690
수질개선특별회계	815,000	24,450
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	586,000	17,580

제 2 조 세입·세출예산액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사고이월사업은 별첨 "사고이월사업조서"와 같다.

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4,239,934천원으로 한다.

제 5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(공기업 특별회계 포함) 지방채차입한도액은 30,9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

1. 공무원보수, 기타직 공무원의 보수
2. 공공요금 및 제세, 급량비, 직무수행경비
3. 배상금, 국선번호료, 법정보상금
4. 지방채원리금과 금리변동으로 인한 이자지출 경비
5. 재해대책비 및 복구경비
6. 반환금
7. 선거관련경비